

Bellevue 시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 ADA) 민원 안내



A. 개요

이 절차는 Bellevue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시설, 활동과 관련하여 1990년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원을 다룹니다. 본 절차는 민원인이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차별 또는 수용 거부된 접근 장벽을 주장하는 민원을 위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 순조롭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와 지정된 중재자 간의 비공식 중재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협박이나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B. 절차

1. ADA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차별을 받았거나 접근이 수용되지 않은 장벽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개인들의 그룹 또는 단체는 지정된 ADA 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은 민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는 구두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2. 서면 민원이 접수되면 지정된 ADA 조정 담당자가 다른 시 사무소와 협의하여 관할권, 수용 가능성, 추가 정보의 필요성, 민원의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합니다.
3. Bellevue 시에 대한 민원 사항인 경우, Bellevue 시는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 시와 계약을 맺은 하수급인, 컨설턴트 또는 계약업체에 대한 내용인 경우, 해당 부서 및/또는 사무국은 역일 15일 이내에 민원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 조사할지 또는 제3자에게 조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시에서 일단 조치 방침을 결정하면 역일 5일 이내에 민원인과 피민원인에게 해당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민원 내용은 지정된 ADA 조정 담당자의 기록에 기록됩니다.
5. Bellevue 시가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시는 피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혐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민원인은 민원 수신 후 10일 이내에 시에 혐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에 지정된 ADA 조정 담당자 또는 타 기관 조사관이 해당 부서 책임자와 시 관리자에게 전달할 서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건에 대한 서술, 면담 대상자의 신원,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추천 사항은 시 검찰청에서 검토하며, 시 검찰청에서는 지정된 ADA 담당 조정자 및 기타 적절한 부서의 직원과 보고서 및 추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수정되며 당사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최종 확정됩니다.
8. 조사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각 당사자와의 브리핑 일정이 잡힙니다. 민원인과

피민원인 모두 브리핑 중에 보고서 사본을 받게 되며, 각자의 항소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습니다.

9. 민원인 또는 피민원인이 차별적 관행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민원 제기자는 해당 기관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USDOJ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조사 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10. 지정된 ADA 조정 담당자는 접수된 각 민원에 대해 다음 정보가 포함된 연간 민원 일지를 보관합니다.
 -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 민원제기일
 - 민원 근거
 - 민원 처리
 - 민원 상황

